

한국 기독교코칭학회 정관

2021년 3월 19일 제 정
2022년 월 일 1차 변경
2023년 1월 28일 2차 변경
2025년 3월 07일 3차 변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한국 기독교코칭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Christian Coaching Academy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 또는 경기도에 두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용어정의) 이 정관에서 기독교코칭 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성코칭을 말한다.

제4조(목적) 학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① CORE VALUE : 믿음, 소망, 사랑, 섬김, 세상의 빛과 소금
- ② MISSION : 기독교 영성코칭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기여한다
- ③ VISION : 다음 각호의 활동을 기반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영성코칭 능력 향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1. 케리그마 :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성코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2. 디다케 :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연구 발표 등 학술활동과 지도력의 개발과 훈련
 3. 코이노니아 : 전 회원의 상호 친목 도모와 경조사 협력
 4. 디아코니아 : 학회와 회원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향한 봉사와 섬김 활동

제5조(사업) 학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Global Spiritual K- Christian Coaching Model 개발
2. 기독교 코치 양성 및 교육, 기독교 코치 자격 인증과 프로그램 인증 제도 운영 및 연구사업
3. 기독교 코치자격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학술연구 발표, 강의, 기독교영성코칭 컨퍼런스 등의 개최
4. MOU 등을 통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학술교류와 연구활동의 지원 및 연구업적에 대한 포상
5. 학회 및 학회와 관련된 홍보활동

6. 학회지, 논문집, 기타 도서의 간행
7. 학술상 제정 및 시상
8. 기타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코칭선교사 파송 등 제반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구분 및 자격)

-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정관에 따른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②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 코치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유지를 위해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
 평생회원: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학회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 학회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자 자격취득 시, 정회원으로 전환 가능하다.
-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평생회비는 일시에, 연회비는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⑤ 회원 자격, 회비 등 기타 회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가입 및 탈퇴)

-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②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③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면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가입 및 탈퇴 신청서는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무국 앞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제출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학회의 각종 사업 또는 행사에 참여할 권리
 2. 학회의 각종 자료를 이용할 권리
 3. 학회의 코칭 관련 간행물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② 정회원은 제1항의 권리 외에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정관 및 학회 제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단,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정회원 가입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
 2.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③ 정회원(일반회원) 중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해년도의 멘토코치로서의 제반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① 정관 및 학회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② 정관이 정하는 회의의 결의사항 이행

제10조(상벌)

- ① 회원이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패의 수여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시상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한 경우 또는 기타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제명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한다.

제11조(자격상실)

- ① 회원은 다음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한 때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3. 제명된 때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3인 이하
3. 이사 : 5~9인(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④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부회장 중 연장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관계 임원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 1. 학회의 업무집행과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및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 4.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해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단, 회장의 경우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통해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보선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임횟수에 포함한다.
-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다만, 이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16조(명예회장 및 연구위원)

- ① 학회에 명예회장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회장의 직에 있던 자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명예회장은 학회의 전통유지 및 학회의 중요 업무에 관해 자문할 수 있다.
- ④ 연구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학회의 각종 전문분야의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조사연구대상은 업무계획이나 이사회에 결정에 따른다.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및 통지)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에 의결이 있을 때
 - 3.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 사유를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제14조제5항3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④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회장은 총회의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 등을 명시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적 방법(카카오톡 등 의사전달 효과가 인정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감사보고,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사업보고의 승인
4. 임원의 선임(선출) 및 해임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6. 학회의 해산 및 합병 등 학회의 지위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회 운영의 중요한 결정사항

제20조 (의결방법)

- ① 총회는 구성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총회 참가가 불가한 회원은 의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총회는 대면 또는 비대면(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 가능)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총회의 의결은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의결권 제한) 총회 의결사항이 구성원 자신의 책임에 관한 의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구성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14조제5항3호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 ⑤ 회장은 회의 3일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 등을 명시하여 전자적 방법(카카오톡 등 의사전달 효과가 인정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이사회는 대면 또는 비대면(대면과 비대면 동시진행 가능)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이사회 의결은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안 및 기타 규정의 제·개정
2. 정관에 따라 이사회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예산·결산·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운영위원회 등 학회 조직에 필요한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제외)
5.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7. 기타 학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25조 (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요령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서기이사(제24조4항에 따라 임명된 자)가 기명·날인한다.
- ② 회장은 의사록에 기재된 총회 의결사항을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공고한다.

제6장 조 직

제26조 (운영위원회)

- ① 학회는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임원을 포함한 정회원 중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을 포함한 12인이상 24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
- ② 회장이 운영위원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집행한다.
 1. 학회 행정과 사업에 관한 사항
 2. 기타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7조 (학술원) 학회는 연구학술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술원을 설치하고 정회원이 원장이 되며, 원장 임명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사무기구)

- ①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유급직원, 파트타임 포함)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 및 사무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위원회) 학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재원 조달)

- ① 학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출연금품
 2. 회원의 회비
 3. 기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교육, 인증, 출판, 학술논문 게재료 등 사업에 따른 수입금
 6.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7. 기타 수입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의 접수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재산의 관리)

- ① 학회 재산의 보존 및 기타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 ② 학회 재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회의 의결과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회계 연도)

- ① 학회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 ② 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성한다
- ③ 특별회계 잉여금은 제5조 사업 및 관련 활동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

제8장 정관의 변경, 해산 등

제33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참가가 불가능한 회원은 의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4조(해산) 이 학회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다. 다만, 총회 참가가 불가능한 회원은 의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5조 (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 ①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상임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② 청산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의결로 처분 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6조(규정 및 내규)

-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② 회장은 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정관은 2022년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이후 부터 적용된다.

제정 : 2021년 3월 19일(발기인대회)

개정 : 2022년 1월 7일(창립총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일 당시의 평생회원은 개정 정관에 따른 정회원이 된다. 다만, 회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2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